

법정 의무 신고 감염병

수두 (varicella)



질병관리청
KDCA



수두란?

- 제2급감염병

- 수두 바이러스(Human alphaherpesvirus 3)에 의한 급성 발진성 감염병
- 매년 전 세계 약 6천만 명의 수두 환자 발생(90% 소아에서 발생)
- 전염성이 매우 높음*
- 연중 발생하며 4~7월, 11월~1월에 유행

감염경로

- 수두 환자의 수포액과 직접접촉
- 호흡기 분비물 및 피부병변 수포액을 에어로졸로 흡입

잠복기 : 10~21일 (평균 14~16일)

전염기 :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병변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수두 환자의 감수성 있는 가족 접촉자의 2차 발병률은 61~90%

임상증상

- 선천성 수두 : 임신 20주 이내에 수두에 감염된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선천성 수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상소견*이 나타남
- 후천성 수두(출생 후 발생한 수두)

전구기

발진 시작 1~2일 전부터 열감과 권태감이 나타남
※ 소아는 발진이 첫 증상인 경우가 많음

발진기

발진은 보통 두피, 얼굴, 몸통에 먼저 나타나고 사지로 퍼지는 양상, 백신 미접종자는 전신 발진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24시간 내에 반점(macules), 구진(papules), 수포(vesicles), 농포(pustules), 가피(crust)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

회복기

모든 병변에 가피가 형성되면서 회복됨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Human alphaherpesvirus 3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치료

- 합병증이 없는 경우 대증치료
- 면역기능 정상 12세 이하 : 대증요법
- 청소년, 성인 : Acyclovir 등 항바이러스제 투여

예방(예방접종)

- 소아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 만 13세 미만 : 1회 접종 / 만 13세 이상 : 4~8주 간격 2회 접종
- 성인 : 4~8주 간격 2회 접종

환자관리

- 격리유형 : 표준주의, 공기주의, 접촉주의

구분	격리기간
일반적인 경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수두에 걸려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에 걸린 엄마가 출산한 신생아가 입원중인 경우	생후 21일까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으면 생후 28일까지)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
- 진단기준
 - 환 자 : 수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과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수두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신고방법

웹 신고
(<https://is.kdca.go.kr>)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 FAX 신고



FAQ

Q1. 수두와 대상포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되면 수두로 발병하며, 바이러스는 평생 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회복 후 바이러스가 감각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발하면 대상포진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Q2. 법정 감염병이 아닌 대상포진이 의심되거나 진단될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대상포진은 발생신고가 의무인 법정감염병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2023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45쪽 참조)



올바른 손씻기 영상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 2023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감염병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145)